

(주)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안내문

현재 귀하(사)께서 보유중이신 (주)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본건 사채”)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조건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06일 사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채권자집회 및 사채권 전자등록증명서의 공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안 건 : 제1호 의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 일부 변경)

가. 사채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사채의 명칭	(주)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권면총액)	18,920,467,900원
표면이율	0.00%
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복리 연 4.00%
만기일	2023년 12월 06일
조기상환청구권	2022년 12월 06일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사채관리회사	케이프투자증권(주)

나. 의안의 주요 내용

1) 사채 일부 상환

발행회사의 의무적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에 따른 법원 인가 후 상환이 미도래한 전자등록 금액의 17.5%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Call Option 행사일 :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 법원인가 후 3영업일 째로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1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 행사금액

- 조기상환 행사금액 : 상환이 미도래한 금액의 17.5%
- 조기상환 관련 이자 : 해당 없음

2) 조기상환 기간의 변경

- 2022년 12월 06일 ~ 2023년 03월 06일까지의 총 2회의 조기상환에 관한 내용(청구기간, 지급일, 상환율)을 삭제(소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삭제되는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또는 그 조기상환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즉 동일하게 소멸하며 지연이자, 기한이익상실 불발생으로 취급, 그리고 이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사채관리회사 등에 대한 서면통지가 필요한 경우 그 서면통지 권한을 발행회사에 위임). 다만 9회~10회의 조기상환과 만기상환에 대한 지급일과 상환율은 변동없음.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변경 내역
	FROM	TO			
7차	2022년 10월 07일	2022년 11월 06일	2022년 12월 06일	106.3413%→ 109.9480%	삭제
8차	2023년 01월 05일	2023년 02월 04일	2023년 03월 06일	106.9047%→ 111.0475%	삭제
9차	2023년 04월 07일	2023년 05월 07일	2023년 06월 06일	107.4737%→ 112.1580%	유지
10차	2023년 07월 08일	2023년 08월 07일	2023년 09월 06일	108.0484%→ 113.2796%	유지

3) 기한이익상실 사유 일부 삭제

- 기한이익상실 사유 중 “발행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및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는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함. 단, 그 삭제의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은 9차 조기상환 지급기일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 종료 후에는 다시 기한이익상실 사유로서 효력을 가진다.

4) 중도상환 조건 등 신설

- 발행회사는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각 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의 원리금을 중도상환 한다.
 - ① 현재 진행중인 발행회사가 원고인 양수금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22다291795)에서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발행회사가 판결문상 인용된 채권을 집행(임의변제 수령 포함)한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 집행한 채권액 전액을 본 사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한다. 단, 본문의 조건 성취 또는 그에 따른 원리금 상환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뤄진 경우 본문은 적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 ② 발행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회생절차에서 본건 사채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발행회사는 그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한다.
-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대금이 회사에 납입된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잔존 채무액 중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단, 본건 사채의 잔존 채무액 중 2022. 12. 6.까지 발생한 이자 부분에 해당하는 1,882,208,147원에 대해서는 사채권자들이 이를 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하며, 위 2022. 12. 6.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하기로 한다. 출자전환은 보유채권 비율로 진행한다.

2. 전자등록증명서 발급 절차

- ① 해당 증권사 지점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시면 전자등록증명서 발급청구가 가능합니다.
- ② 각 증권사별로 전자등록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등 절차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증권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③ 사채권자 집회 종료 후 증권사를 통해 증권의 반환처리를 하시면 종전과 같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채권관련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공탁절차

- ① 공탁일시 :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18:00까지 [집회 1주간 전]
- ② 공탁장소 : 각 지방법원 공탁계 (서울중앙지방법원 :02-530-1383~1385, 023016-3497)
- ③ 제출서류 :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공탁일시까지 공탁장소에 제출

제출서류	수량
- 유가증권 공탁서 (첨부3-1)	2부.
- 전자등록증명서 (첨부1. '전자등록증명서 공탁 및 공탁서 수령절차 안내' 참조)	1부.
- 소집공고문 사본 (첨부2)	1부.
- 채권자 신분증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는 공탁 시, 1부는 전자등록증명서 반환청구 시 필요)	2부.
-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청구서 (첨부3-2)	2부.

④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제출서류	수량
- 대리인 위임장 (첨부3-3 및 3-4)	2부.
-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1부.

4. 사채권자집회 참석 참고사항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직접행사의 경우
 -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 신분증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대표이사 신분증)
 - 인감 (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공증위임장 작성시)
 -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② 대리행사의 경우
 -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 인감 날인된 출석 및 의결권 행사 위임장, 인감 날인된 공증 위임 (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것)
 -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5. 서면 의결권 행사

상법 제495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첨부 4' 양식에 따른 의결권 행사 서면을 집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채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 사채 전자등록증명서 사본
-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 날인된 공증위임장 (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것) (첨부8)

6. 공탁대행

(주)뉴로스는 사채권자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탁업무를 대행해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 공탁대행의 범위 : 공탁, 전자등록증명서 반환

나. 하기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18:00까지 (주)뉴로스로 보내주시면 공탁 관련 사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수량
- 전자등록증명서	1부.
- 인감 날인된 유가증권 공탁서 (첨부3-1)	1부.
- 인감 날인된 공탁유가증권 출급 회수 청구서 (첨부 3-2)	1부.
- 인감 날인된 유가증권 공탁 위임장 (첨부 3-3)	1부.
- 인감 날인된 공탁유가증권 출급 회수 위임장 (첨부 3-4)	1부.
- 채권자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2부.
- 인감증명서 (1부는 공탁 시, 1부는 전자등록증명서 반환청구 시 필요)	2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첨부 7 참조, 법인은 해당없음)	1부.

다. 서류를 보내주실 때 효력발생 후 전자등록증명서를 돌려받으실 주소와 전화번호 및 담당자명을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보내주실 곳 : 우)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2로 274, (주)뉴로스 재무기획팀앞

※ 문의전화 : (주)뉴로스 재무기획팀 042-865-7456

첨부 1. [전자등록증명서 공탁 및 공탁서 수령절차 안내]

전자등록증명서의 공탁은 상법 제492조 제2항에 따라 집회일(2022년 12월 06일) 1주간 전인 2022년 11월 28일까지 반드시 공탁되어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전자등록증명서 발급 및 공탁 등의 하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 차	준 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①</p> <p style="text-align: center;">전자등록증명서 발급 청구 및 수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증권사 지점을 통해 청구 가능(전화 또는 방문) - 증권사 및 지역에 따라 필요서류 등 절차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증권사 담당자와 사전 협의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②</p> <p style="text-align: center;">전자등록증명서 법원 공탁</p> <p style="text-align: center;">공탁서 확인 (법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탁서 작성 (별첨 양식 참조) 공탁서 양식 및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https://ekt.scourt.go.kr/ekt/userjiwon/ktBizGd/inqKtForm.dev) → 유가증권 검색 → ‘유가증권 공탁서(변제등)’,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 청구서’ - 하기 서류를 구비하여 각 지방법원 공탁계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① 전자등록증명서 ② 공탁서(유가증권) 2부 ③ 집회공고 사실확인서류(공고문 사본) ④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인감증명서 ⑥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청구서 2부 * 대리인 위임시 : ⑦ 대리인위임장(첨부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⑧ 대리인신분증 추가제출 - 법인 채권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첨부 - 지방법원의 공탁계에서 공탁서 수리 확인 후 지정하는 공탁은행으로 방문
<p style="text-align: center;">③</p> <p style="text-align: center;">납입확인(지정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공탁은행 방문하여 공탁서 하단에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의 납입증명도장을 받아야 함

(주)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주)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본건 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12월 06일 (화요일) 14:00

2. 장 소 : 한국컨퍼런스센터 B1F 컨퍼런스A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 8)

3. 참석대상 : (주)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

4. 안 건

가. 제1호 의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 일부 변경의 건)

- 1) 사채 일부 상환
- 2) 조기상환 기간의 변경
- 3) 기한이익상실 사유 일부 삭제
- 4) 중도상환 조건 등 신설

5. 내 용

1) 사채 일부 상환

발행회사의 의무적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에 따른 법원 인가 후 상환이 미도래한 전 자등록 금액의 17.5%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Call Option 행사일 :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 법원인가 후 3영업일 째로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1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 행사금액

- 조기상환 행사금액 : 상환이 미도래한 금액의 17.5%
- 조기상환 관련 이자 : 해당 없음

2) 조기상환 기간의 변경

- 2022년 12월 06일 ~ 2023년 03월 06일까지의 총 2회의 조기상환에 관한 내용(청구기간, 지급일, 상환율)을 삭제(소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삭제되는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또는 그 조기상환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즉 동일하게 소멸하며 지연이자, 기한이익상실 불발생으로 취급, 그리고 이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사채관리회사 등에 대한 서면통지가 필요한 경우 그 서면통지 권한을 발행회사에 위임). 다만 9회~10회의 조기상환과 만기상환에 대한 지급일과 상환율은 변동없음.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변경 내역
	FROM	TO			
7차	2022년 10월 07일	2022년 11월 06일	2022년 12월 06일	106.3413%→ 109.9480%	삭제
8차	2023년 01월 05일	2023년 02월 04일	2023년 03월 06일	106.9047%→ 111.0475%	삭제
9차	2023년 04월 07일	2023년 05월 07일	2023년 06월 06일	107.4737%→ 112.1580%	유지
10차	2023년 07월 08일	2023년 08월 07일	2023년 09월 06일	108.0484%→ 113.2796%	유지

3) 기한이익상실 사유 일부 삭제

- 기한이익상실 사유 중 “발행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및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는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함. 단, 그 삭제의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은 9차 조기상환 지급기일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 종료 후에는 다시 기한이익상실 사유로서 효력을 가진다.

4) 중도상환 조건 등 신설

- 발행회사는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각 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의 원리금을 중도상환 한다.
 - ① 현재 진행중인 발행회사가 원고인 양수금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22다291795)에서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발행회사가 판결문상 인용된 채권을 집행(임의변제 수령 포함)한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 집행한 채권액 전액을 본 사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한다. 단, 본문의 조건 성취 또는 그에 따른 원리금 상환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뤄진 경우 본문은 적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 ② 발행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회생절차에서 본건 사채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발행회사는 그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한다.
-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대금이 회사에 납입된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잔존 채무액 중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단, 본건 사채의 잔존 채무액 중 2022. 12. 6.까지 발생한 이자 부분에 해당하는 1,882,208,147원에 대해서는 사채권자들이 이를 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출자전환 하기로 하며, 위 2022. 12. 6.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하기로 한다. 출자전환은 보유채권 비율로 진행한다.

6. 소 집 자 : (주)뉴로스

7. 참고사항

- 1)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직접행사
 -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 ② 신분증
 -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와 대표이사 신분증
 - ③ 인감
 - 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공증위임장 작성 시 필요
 - ④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대리행사
 -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 ② 인감 날인된 출석 및 의결권 행사 위임장
 - ③ 인감 날인된 공증위임장
 - 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것
 - ④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⑤ 대리인 신분증

- 2) 사채권자는 집회 1주간 전인 2022년 11월 28일까지 상법 제 49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증명서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3) 사채권자소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neuros.com/>)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법원의 인가 후 본건 사채를 보유하고 계신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상법 제49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 없이도 바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4)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가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 5) 공탁절차 및 서면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주)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 집회 안내문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관련 문의사항은 (주)뉴로스 재무기획팀 (Tel.:042-865-7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 당일 집회장소의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차	개최일자	사채관리회사	발행회사
제11회	2022년 12월 06일	케이프투자증권(주)	(주)뉴로스

2022년 11월 28일

(주)뉴로스 대표이사 김승우

[제1-5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서(변제 등)

공 탁 번 호		년 증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피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탁유가증권				공탁 원인 사실			
명 칭			계				
장 수							
총액면금	한글 숫자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액면금 기호번호							
부속이표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최종 상환기				비 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유가증권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유가증권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유가증권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4.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8-2호 양식]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 청구서

공탁번호		년 증 제 호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피 공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탁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청구 내역	명 칭	장 수	총 액면금	액면금, 기호, 번호	비 고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청구 및 이의유보 사 유					
비고(첨부서류 등)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리인 주소 성명		인(서명)	
		인(서명)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위 유가증권과 그 이표(공탁유가증권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인)

- ※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1,000만원 이하의 공탁유가증권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 임 장

대리인 기본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본인은 위 대리인에게

사채권자집회관련 유가증권 공탁업무 등 일체를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첨부 3-4. [공탁유가증권 출급, 회수업무 위임장]

위임장

대리인 기본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본인은 위 대리인에게

사채권자집회관련 공탁유가증권 출급, 회수업무 등 일체를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첨부 4. [(주)뉴로스 제1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의결권행사서면]

(주)뉴로스 귀중

(주)뉴로스 제1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의결권행사서면

성명		생년월일(개인) 사업자등록번호(법인)	
주소			
보유사채금액	원	의결권 행사 사채금액	원

본인은 (주)뉴로스 제1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2022년 12월 06일 오후 14시,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예정, 그 연회 또는 속회 포함)의 아래 의안에 대하여 상법 제 495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해당란에 ○ 또는 √ 표 하십시오.

의안	내용	찬성	반대	기권
제1호 의안	<p>1) 사채 일부상환 발행회사의 의무적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에 따른 법원 인가 후 상환이 미도래한 전자등록 금액의 17.5%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Call Option 행사일 :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 법원 인가 후 3영업일 째로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1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 행사금액 - 조기상환 행사금액 : 상환이 미도래한 금액의 17.5% - 조기상환 관련 이자 : 해당 없음</p> <p>2) 조기상환 기간의 변경 2022년 12월 06일 ~ 2023년 03월 06일까지의 총 2회의 조기상환에 관한 내용(청구기간, 지급일, 상환율)을 삭제(소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삭제되는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또는 그 조기상환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즉 동일하게 소멸하며 지연이자, 기한이익상실 불발생으로 취급, 그리고 이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사채관리회사 등에 대한 서면통지가 필요한 경우 그 서면통지 권한을 발행회사에 위임). 다만 9회~10회의 조기상환과 만기상환에 대한 지급일과 상환율은 변동없음.</p>			

의안	내용					찬성	반대	기권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변경 내역			
	7차	2022년 10월 07일	2022년 11월 06일	2022년 12월 06일	106.3413%~ > 109.9480%	삭제			
	8차	2023년 01월 05일	2023년 02월 04일	2023년 03월 06일	106.9047%~ > 111.0475%	삭제			
	9차	2023년 04월 07일	2023년 05월 07일	2023년 06월 06일	107.4737%~ > 112.1580%	유지			
	10차	2023년 07월 08일	2023년 08월 07일	2023년 09월 06일	108.0484%~ > 113.2796%	유지			
	<p>3) 기한이익상실 사유 일부 삭제 기한이익상실 사유 중 “발행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및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는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함. 단, 그 삭제의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은 9차 조기상환 지급기일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 종료 후에는 다시 기한이익상실 사유로서 효력을 가진다.</p> <p>4) 중도상환 조건 등 신설 - 발행회사는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각 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의 원리금을 중도상환 한다. ① 현재 진행중인 발행회사가 원고인 양수금 소송 (사건번호: 대법원 2022다291795)에서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발행회사가 판결문상 인용된 채권을 집행(임의변제 수령 포함)한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 집행한 채권액 전액을 본 사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한다. 단, 본문의 조건 성취 또는 그에 따른 원리금 상환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뤄진 경우 본문은 적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② 발행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회생절차에서 본건 사채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발행회사는 그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한다. -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대금이 회사에 납입된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잔존채무액 중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단, 본건 사채의 잔존 채무액 중 2022. 12. 6.까지 발생한 이자 부분에 해당하는 1,882,208,147원에 대해서는 사채권자들이 이를 위 제3자배정 유상증자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하며, 위 2022. 12. 6.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하기로 한다. 출자전환은 보유채권 비율로 진행한다.</p>								

- ※ 첨부. 1. 사채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1부.
2. 사채 전자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1부.
4.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인감 날인된 공증위임장 (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것) 1부.

2022년 월 일

사채권자

(인감)

※ 의결권 행사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누락되는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송부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74 (주)뉴로스 재무기획팀

※ 의결권의 서면행사 시한 : 집회일 전일 18:00까지 도착

첨부 5.[사채권자집회 출석 및 의결권 행사 위임장(공탁포함)]

위임장

대리인 기본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본인은 위 대리인에게

아래 사채권에 관하여 2022년 12월 06일 개최 예정인 제11회 신주인수권
부사채 사채권자집회와 그 속행기일에서의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이러한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한 사채권 공탁에 관한 일체
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대상 사채권

(주)뉴로스 제1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

권면금액 : 금 _____ 원 (₩)

2022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첨부 6.[사채권자집회 출석 및 의결권 행사용 위임장]

위 임 장

대리인 기본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본인은 위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개최되는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 집회명 : (주)뉴로스 제1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 집회
일 시 : 2022년 12월 06일 14시
장 소 : 한국컨퍼런스센터 B1F 컨퍼런스A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 8)
의 안 : 제1호 의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 일부 변경의 건)

2022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인감/법인인감 날인 및 3개월 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첨부
- ※ 수임인은 사채권자집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시 위임인의 공탁서 원본, 전자등록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소지 하여야 함.

첨부 7.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사채권자 집회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뉴로스의 제11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 집회 (개최일 : 2022년 12월 06일, 이하 “사채권자 집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항목	수집,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 (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성별, 국적, 음성 DATA	본건 사채권자 집회 관련 정보의 제공,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 관련 분쟁처리, 관련 민원처리, 전 화상담 업무, 본인여부확인 목적	본건 사채권자 집회 관련 업무의 종료시까지 (본건 사채권자 집회 완료를 포함하며,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내역

항목	수집, 이용 목적	보유기간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본건 사채권자 집회 관련 정보의 제공,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 관련 분쟁처리, 관련 민원처리, 전 화상담 업무, 본인여부확인 목적	본건 사채권자 집회 관련 업무의 종료시까지 (본건 사채권자 집회 완료를 포함하며,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2022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뉴로스 대표이사 귀중

별첨. 정보제공양식

■ 본인 기재사항

상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따라 본건 사채권자 집회 관련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해 주시는 사채권자께서는 아래 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성명 : _____

②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 _____ 또는

운전면허번호 / 여권번호 : _____ 또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_____

③ 실제 우편물 수령할 주소

(가급적 도로명 주소로 작성) _____

④ 주민등록지(개인의 경우) 또는 등기된 본점 소재지(법인인 경우) 주소

(가급적 도로명 주소로 작성) _____

⑤ 연락처 휴대폰 : _____ 자택 : _____ 직장 : _____

⑥ 이메일 주소 : _____

⑦ 직장명 : _____ ⑧ 부서 : _____ ⑨ 직위 : _____

위 임 장

대리인 기본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본인은 위 대리인에게

(주)뉴로스 제1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법인인감 날인 및 3개월 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첨부